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가단1373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9,181,656원 및 그 중 16,799,846원에 대하여 2022.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2. 4.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홍주현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B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B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약의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 B은 2015. 12. 22.경 소외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서 신용카드회원 약관에 따라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그 즈음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2 각 카드수령증, 특수채권 원장조회(신용카드)].

또한 위 B은 위 카드를 사용하여 2016. 5. 23.경 금 500만 원의 카드본대출을 받았습니다[갑 제1호증의 3 특수채권 원장조회(장기카드대출) 참조].

그런데 위 B은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출금의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D는 2019. 4. 3.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위 B은 위 양수금과 관련하여 금 39,181,656원 및

그 중 금 16,799,846원에 대하여 2022.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B의 어머니는 소외 E이었는데, 위 E는 2021. 12. 11. 사망하였고, 위 B은 위 E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 (위 E의 상속인들 및 B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고 C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2. 4. 28. 위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실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위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B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B의 재산인데, B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 C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B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인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C 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B 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기 제출한 소장의 기재 내용을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와 모순되지 않는 한 원용합니다.

2.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E는 2021. 12. 11.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B (피고 1, 채무자), C (피고 2, 수익자), F가 있었습니다(갑 제5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제7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참조).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 C와 채무자인 피고 B은 형제 관계이고, 위 B의 상속지분은 '1/3'입니다.

나. 위 E는 2021. 12. 11. 사망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22. 4. 25.'입니다(갑 제7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따라서 위 2022. 4.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사례행위위소 소송의 대상입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1/3 지분은 피고 채무자 B이 상속받았어야 함에도,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 C이 상속받

는 것으로 본합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3. 채무자 피고 B의 무자력

가. 법원행정처의 2022. 10. 20.자 회신에 의하면, B은 2020. 12. 1.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22. 4. 25.)를 거쳐 조회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유일 소유 부동산임).

나. 아울러, G의 2022. 10. 14.자 신용정보조회회답서에 의하면, B은 위 사해행위 당시(2022. 4. 25.)

- ① H카드에 각 금 3,200,000원(2016. 10. 26. 연체 발생), 금 7,099,000원(2016. 9. 28. 연체 발생),
- ② I카드에 각 금 14,000,000원(2016. 9. 29. 연체 발생), 금 9,299,000원(2016. 9. 29. 연체발생),
- ③ J카드에 각 금 20,000,000원(2016. 10. 11. 연체 발생), 금 7,499,000원(2016. 10. 14. 연체발생),
- ④ K카드에 금 6,382,000원(2016. 10. 21. 연체 발생),
- ⑤ L카드에 금 6,228,000원(2016. 10. 17. 연체발생),
- ⑥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금 2,997,000원(2016. 10. 12. 연체 발생),
- ⑦ M자산관리에 각 금 20,000,000원(2016. 9. 26. 연체발생), 금 22,599,000원(2016. 9. 26. 연체발생),

[위 회답서 중 '신용정보 조회 결과' 참조 ; 사해행위 이전에 채무·연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미변제된 채무임]

등 **합계 119,303,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위 채무는 이자는 제외한 '원금'만에 대한 것으로, 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채무액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이 피고 B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고 B은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순래브3층 다세대주택

1층 및 2층 각 59.84㎡, 3층 54.77㎡, 지층59.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 13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2.9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33분의 33.97 ㎡.

